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대학원혁신본부), 02-970-6807

제정 2018. 8. 24.

개정 2019. 12. 30.

타규정개정 2021. 9. 1.

개정 2022. 9. 1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글로벌 철도연수과정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」,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 규정」,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국인 학생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(개정2021. 9. 1.) 제3조(설치)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와 한국철도협회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해외 참가국가의 철도 관련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철도전문대학원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을 설치・운영한다.

제4조(주임교수) ①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주임교수를 둔다.

② 주임교수는 본교의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대학원혁신본부장이 임명

-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2021. 9. 1.)
- ③ 주임교수는 학과의 수업, 연구지도, 이수과목의 지정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.
- 제5조(위원회)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 제24조에 따른 철도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(이하 "대학원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 - 1. 입학, 졸업 및 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
 - 2. 교과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비교과과정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의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제6조(입학전형)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7조(재정운영) 글로벌 철도연수과정과 관련된 예산은 한국철도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,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과 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.
- 제8조(등록금) ①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학생의 등록금은 철도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, 계절학기 수강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 - ② 등록금은 계절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책정하되, 학교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분할 납부한다. 다만, 지원금이 수납기간 이후에 입금된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납부한다.
 - ③ 학생이 자퇴 등 중도 탈락한 경우에는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

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.

- 제9조(수강신청)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에서 학기당 최소 3학점 이상, 최대 15학점 이하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수업연한, 등록학기, 수업방법) ①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수업연한 은 1년 6개월, 등록학기는 3개 학기로 한다.
 - ② 수업은 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하며,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 습수업을 할 수 있다.
- 제11조(계절학기) ① 정규학기 이외에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절학기는 등록학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② 계절학기 개설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되, 1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(실험, 실습 교과목은 30시간) 이상으로 한다.
 - ③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.
- 제12조(학위수여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학석사 또는 공학석사를 수여한다.
 - 1.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, 취득한 전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3.0(B°) 이상 이 학생
 - 2.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 (개정2021. 9. 1.)
 - 3. 제14조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
- 제13조(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) ①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

- 다. (개정2021. 9. 1.)
- ②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전공분야의 기초 및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종합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, 교과목의 수는 2과목으로 한다. (개정2021. 9. 1.)
- ③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교과목 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 (개정2021. 9. 1.)
- 제14조(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자격) ①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등록한 학생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, 대학원혁신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2021. 9. 1.)
 - 1. 3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
 - 2. 필수 교과목과 학위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거나, 해당 학기까지 이수 예정인 학생
 - 3. 전체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.0(B°) 이상인 학생
 - 4.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 (개정2021. 9. 1.)
-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 제15조(삭제 2019. 12. .)
- 제16조(계약학과 학생의 등록)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 규정」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철도전문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 글로 벌 철도연수과정에 등록할 수 있으며, 이 규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,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」을 준용한다. (개정20 21. 9. 1.)

부 칙<제447호, 2018. 8. 24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505호, 2019. 12 30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 규정 제632호, 2021. 9. 1.> (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713호, 2022. 9. 14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